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2. 4. 14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577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4. 1. 강남구청장(기획예산과)
- 나. 상정의결
 -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2. 4. 14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은승일)

- 가.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 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,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(안 제6조)
 - ‘위원회’를 ‘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로 한다)’로의 명칭 변경(안 제8조)
 - ‘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’를 ‘위원회’로의 명칭 변경(안 제9조)
-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입법예고(2022. 1. 5. ~ 2022. 1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대상 제외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- 법제처의 <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> 및 <법령입안심사기준>에 따라 정비하고 강남구규칙인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이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(목적) 및 제4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에서는 <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>에 따라 띄어쓰기를 한 것임.
 - 안 제6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제1항제1호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전 부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임.
 - 안 제8조(이자) 및 제9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에서는 약칭의 사용용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, 용어정비를 한 것으로 보임. 다만, <법령입안심사기준>¹⁾에 따라 약칭사용에 대해서는 <예시>²⁾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

1) <법령입안심사기준>

약칭하는 용어가 어떤 행정기관, 법인 또는 사물의 고유한 명칭일 경우 근거조문이나 근거가 되는 장·절이 따로 있으면 그 장·절의 제목에서는 그 행정기관, 법인 또는 사물의 고유한 정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, 해당 근거 조문이나 장·절에 앞서서 그 용어가 자주 사용될 때에는 최초로 나오는 조문에서 그 용어의 약칭을 사용하되, 해당 설립 근거 조문이나 장·절의 제목에서는 정식 명칭을 사용함.

2) <예시>

바람직해 보임.

- 안 제14조(관계법규의 적용)에서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이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2020.11.6. 전부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

제8조(이자)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제9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577호

제안일자 : 2022.4.14.

제안자 : 행정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약칭의 사용용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수정주요내용

- 약칭을 위원회 고유의 정식 명칭으로 수정(안 제8조)
- 위원회 설치 근거 조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용심의위원회의 정식 명칭 기재 후 약칭 사용(안 제9조제1항)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중 “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
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” 를 “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
재정안정화기금심의운용위원회” 로 한다.

안 제9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 를 현행과 같이 “강남구 통합재정안
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이자)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<u>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이자)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<u>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심의를 거쳐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이자) ----- ----- ----- --- <u>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	<p>제9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위원회</u>를 둔다.</p>	<p>제9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<u>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--- --.</p>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”을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차례에 한정하여”를 “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</p> <p>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</p> <p>① ----- -----.</p> <p>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</p>	<p>제6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2. 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8조(이자)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제9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~ ④ (생략)

⑤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, 복지생활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위원은 강남구 의회 의원, 기금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, 민간위원이 3분의 1이

-----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이자)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-----.

제9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1 이

상이 되어야 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⑦ (생략)

제14조(관계법규의 적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적용한다.

상-----.

⑥ -----
-- 차례만 -----
---. -----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관계법규의 적용) -----
-----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
-----.